

# 김포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

의안 번호	제 호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2025. 1. .  
제출자 유매희, 이희성 의원

## 1. 제안이유

- 「노후준비 지원법」 제3조 제1항에 근거하여 김포시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 (안 제1조 ~ 제2조)  
나. 노후준비 지원사업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(안 제3조 ~ 제4조)  
다.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위탁 및 노후준비협의체 구성 (안 제5조 ~ 제6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 : 「노후준비 지원법」  
나. 그 밖의 사항  
1) 입법예고  
가) 예고기간 : 2025. 0. . ~ 2025. 0. .  
나) 예고결과 :  
2) 부서협의  
가) 협의기간 : 2025. 1. . ~ 2025. 1. .  
나) 협의결과 :  
3) 관련부서 : 노인장애인과

# 김포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노후준비 지원법」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포시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노후준비”란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·질병·무위·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노후준비서비스”란 개인이 신체적·정신적·사회적·경제적인 영역 등 모든 영역에서 적절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재무·건강·여가·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노후준비 진단, 상담, 교육,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.
3. “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”란 노후준비 관련 정보 제공, 홍보, 상담,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.

제3조(노후준비 지원사업) 김포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김포시민의 생애주기 노후준비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제고
2. 노후준비 실태에 대한 조사·연구·교육 및 통계생산
3.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프로그램 개발
4.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 등의 구축·운영
5. 노후준비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협력
6. 그 밖에 시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4조(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) ① 시장은 「노후준비 지원법」 제10조 제1항에 따라 김포시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, 김포시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출자·출연 기관,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,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관 등을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장은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복수로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위탁) ① 시장은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후준비 교육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「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를 준용한다.

③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노후준비협의체 구성) ① 시장은 「노후준비 지원법」 제10조 제2항에 따라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김포시 노후준비협의체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김포시 노후준비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.

1. 노후준비 진단 및 상담 지원 협의
2. 노후준비 교육 지원 협의
3. 재무, 여가, 건강, 대인관계 등 모든 영역별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

4. 그 밖에 노후준비에 필요한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역할

③ 시장은 노후준비협의체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[부칙]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노후준비 지원법**

[시행 2024. 12. 20.] [법률 제20588호, 2024. 12. 20., 일부개정]

보건복지부(인구정책총괄과), 044-202-3364

제1조(목적) 이 법은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노후준비”란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·질병·무위·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노후준비서비스”란 개인이 신체적·정신적·사회적·경제적인 영역 등 모든 영역에서 적절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재무·건강·여가·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노후준비 진단, 상담, 교육,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사업주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, 소속 직원의 노후준비를 권장·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노후준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하며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는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
2.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
3. 건강, 대인관계, 여가, 재무 등 모든 영역별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③ 정부는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20조에 따른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할

때 기본계획을 포함할 수 있으며, 시·도지사는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21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.

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기본계획이나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⑤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6조(노후준비 지원사업)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생애주기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.

1.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제고
2. 노후준비 실태에 대한 조사·연구·교육 및 통계생산
3.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프로그램 개발
4.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
5.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평가에 관한 사항
6.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양성·관리
7.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 등의 구축·운영
8. 노후준비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국제협력
9. 그 밖에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10조(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국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,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(그 분사무소를 포함한다),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,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관 등을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(이하 “지역센터”라 한다)로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센터를 복수로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
1.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연계
2. 노후준비서비스 홍보 및 노후준비 인식 제고
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지역노후준비협의체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.

④ 지역센터의 신청절차 및 지정기준·절차, 평가방법, 폐지·휴지·재개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